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26-117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9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인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 및 제29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전○영	96.08.20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서원구 (이하생략)
2	김○린	03.12.28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서원구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11.9. ~ 2026.11.2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김유정(Tel. 043-230-67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